대한산업안전협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또는 설치 검사를 받고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며, 1회 안전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안전교육의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협회는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교육)으로 지정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신 실습 및 실험자재를 구비해 놓는 한편 교육 교안과 교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또한 전문적인 강사진을 발굴·육성하는 등 맞춤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 결과 협회는 지난 6월 실시된 서울시의 현장실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향후 협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기반으로 지식전달식이 아닌 체감형, 실무형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그간 협회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최적화한 학습방법으로 50여 년 동안 국내 산업안전교육분야를 이끌어왔다"면서 "국내 최고의 재해예방기관이자 안전교육기관답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선진 안전문화의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교육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방향 발표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해위험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정책방향은 크게 계단식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간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방향은 산업안전보건의 점진적인 강화에 맞춰졌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고용부는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등 주요 산업안전정책을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또 고용부는 하반기 동안 인체유해성이 큰 고위험물질 관리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채찍만 가하는 것은 아니다. 화학설비 유지·보수 공사 시 반드시 준수해야할 안전수칙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사례, 안전관리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화학공장 유지·보수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도급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의 제도 적용 업종도 기존 건설·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8월 중에 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주요과제의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해 미비점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시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 민간 · 노사 등과의 협업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대상 정부 합동 정밀 안전진단 실시

안전한 산업단지를 구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구미, 여수 등 산업단지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5년간 전국 87개 노후 국가 ·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진단은 산단 내 유독물 취급설비, 전기 · 가스설비 등 취약 설비와 도로 · 교량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 산자부는 오는 11월까지 18개 국가산단에 입주한 811개 중소기업과 기반시설 71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 공단은 광양, 광주첨단, 구미, 군산, 군산2, 남동, 대불, 명지녹산, 반월, 시화, 여수, 온산, 울산미포, 익산, 창원, 포항, 부평, 주안 등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해 있는데다 위험물 취급설비(위험물안전관리법, 방재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산업부) 등 시설별로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는 복합 공간이다. 때문에 그간 안전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 해당 전문기관이 각 시설별로 검사를 설계 ·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산단 및 기업의 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점과 점검기관의 협업 미흡 등으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검사 · 점검은 위험요인 지적 및 시정명령에 그쳐왔으나,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실제 안전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식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라며 "진단 결과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운데 산업단지가 지역행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관리 강화 추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사전신고 외에 작업의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 · 제거작업 전에 해당 작업장의 석면함유자재의 종류 · 면적,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전신고 절차만으로는 개별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한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작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상일 의원은 "석면해체 · 제거업자가 석면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하여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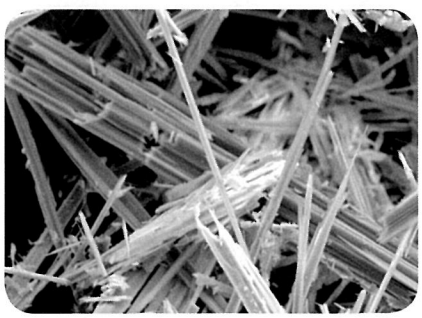

▲석면